

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

[윤영희 의원 대표발의]

의안번호	2662
------	------

발의일자 : 2025. 1. 23.

발 의 자 : 윤영희 의원

장규권 의원

찬 성 자 : 정재동 의원

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등의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율소방대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, 구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.

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.

다. 자율소방대 지원(안 제4조).

라. 자율소방대 평가(안 제5조).

마. 협력체계 구축(안 제6조).

바. 표창(안 제7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65조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
다. 기 타

1) 현행 조례 : 해당 없음

2)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 없음

3) 입법예고 : 2025. 2. 4. ~ 2. 10.

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 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예방 및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,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전통시장”이란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.
2. “상점가”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.
3. “골목형상점가”란 법 제2조제2의2호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.
4. “자율소방대”란 전통시장,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(이하 “전통시장등”이라 한다)에서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·운영되는 상인조직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전통시장등의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해 자율소방대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자율소방대 지원) ① 구청장은 자율소방대의 다음 각 호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전통시장등의 화재예방을 위한 순찰, 안전점검 및 홍보
2. 자율소방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
3.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을 위해 필요한 장비·물품
4.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절차, 선정기준 등 지원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제5조(자율소방대 평가) 구청장은 자율소방대의 활동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6조(협력체계 구축) 구청장은 자율소방대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7조(표창) 구청장은 전통시장등의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율소방대 또는 자율소방대원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(약칭:전통시장법)

[시행 2024. 3. 15.] [법률 제19234호, 2023. 3. 14., 일부개정]

제65조(상인회) ①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5. 28.>

④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5. 28., 2018. 6. 12., 2024. 2. 20.>

6. 화재나 자연재해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·운영에 관한 업무

⑦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